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 중 “도지사, 부지사, 실.국.원.장등 소속 공무원”을 “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51조 제3호 중 “3급이상 공무원 관사”를 “시설관리사, 기타 필요한 경우의 관사”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56조 제3호 단서중 “3급”을 “2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